

배포 2023. 10. 16.(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10.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면) 2023. 10.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

-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개발 추진
-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이 심의 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건의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하여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3-6465)
		담당자	서기관	전수문 (044-203-6466)

붙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는 경우 기술 결함 및 기술의 적합성 여부도 검정하도록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한 후 합격공고를 할 때에는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환경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과용도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4. 5.,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음반·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음반·영상 및”을 “서책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표현 오류”를 “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성 여부”를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성명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책: 판형·쪽수·지질 및 제본방법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다.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수량·용량 및 사
용환경

제14조제3항 본문 중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
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중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을 “구분·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사·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의3(중전의 제2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3항 중 “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지질”을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제40조제3항 전단 중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을 “위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
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u>서책 · 음반 · 영상 및 전자저작물</u> 등을 말한다.		2. -----		

		-----		<u>서책,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 · 영상 등의 -----</u>
		-----		--.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u>서책 · 음반 · 영상 및 전자저작물</u> 등을 말한다.		3. -----		

		-----		<u>서책 및 그 밖에 음반 · 영상 등의 -----</u>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개편”이라 함은 <u>교육과정</u> 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 · 영상 · 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		7. -----		<u>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u>

한다.	<u>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u>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u>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 ----- ----- <u>1년 6개월</u>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검정방법) ① (생략)	제9조(검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 <u>표현 오류</u> 등을 조사한다.	② ----- ----- <u>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u> -----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u>적합성 여부</u> 를 심사한다.	③ ----- ----- ----- <u>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합격공고) <u>교육부장관은</u>	제11조(합격공고) <u>교육부장관은</u>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생략)
- ② 삭제
-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성명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서책: 판형·쪽수·지질 및 제본방법
 -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 다.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

-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③-----

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 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

3개월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
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

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 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신 설>

-----제14조제5항-----

-----.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

간) ①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
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 구분·편찬·검
정·인정·가격결정 -----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
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
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
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사·연구·용역 등
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
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제2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

-----.

④・⑤ (생 략)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4.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

-----.

1. (현행과 같음)

2. -----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

3.・4.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
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
우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위
임된 -----

-----.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
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
서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